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 2명(6급 +1, 7급 +1)
 - 전문경력관 :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
 - 연 구 직 : + 2명(연구관 +2)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 연 구 관 : 19% 이내 → 20% 이내
 - 연 구 사 : 81% 이상 → 80% 이상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라 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의 증원과, 이의 대응업무를 담당할 보건정책과 보건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치연수원 레크레이션 강의 전담으로 채용했던 전문경력관이 현재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행정7급으로 변경하고,

농산사업소의 찰옥수수 신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해 보건연구사 1명을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변경하고,

연구관 증가(28명→30명)에 따라 연구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연구원 19% 이내에서 20% 이내, 연구사 81%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정원이 3,295명에서 3,298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조직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 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